

프로미카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보험약관

2025년 10월 11일

promy car | promy life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브랜드 프로미카와 장기보험 브랜드 프로미라이프를 통해 고객의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다는 보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프로미(Promy)는 Promise(약속)을 줄인 말로, 고객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DB손해보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DB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프로미카 영업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의께 감사드립니다.
다.

DB손해보험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보험공영사로 출범한 이래
보험업계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평가기관으로부터
튼튼한 재무 건전성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한 국민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고객님의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DB손해보험은 고객님의 성원에 보답하고, 세계속의 초우량 보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선진화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님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겠다는 DB손해보험의 힘찬 발걸
음에 더욱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DB손해보험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 SOS 긴급출동
- * 자동차 사고접수
- * 보험관련문의 등
24시간 365일 서비스

[고객서비스센터 안내]

강북 : 02) 3150-4450
강남 : 02) 3011-5240
부산 : 051) 811-5500
대구 : 053) 251-4100
경인 : 031) 463-6070
충청 : 042) 606-7000
호남 : 062) 220-8300

DB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0100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항목별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보험계약
만기까지 고객님의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5p

주요내용 요약서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통약관 주요 보장
종목 및 면책사항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12p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 보험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19p

보통약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약관의 본문내용입니다.

21p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보상내용을
확대(추가)하시거나 제한(축소)하실 때
고객님이 선택 가입하실 수 있는 특별약관
본문내용입니다.

96p

가입자 유의사항

I. 가입 시 유의사항

1. 가입 전 확인사항 6
 2. 가입 후 확인사항 7

II. 보험기간 중 유의사항

1. 계약변경 8
 2. 사고 발생 시 우선 조치 사항 9
 3. 보상처리 절차 및 방법 10

III. 만기 시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모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프로모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27
 제1절 대인배상 I 27
 제2절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 27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2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30
 제1절 자기신체사고 30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2
 제3절 자기차량손해 34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38
 제2장 손해배상금청구권자의 직접청구 41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43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44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8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49
 제4장 그 밖의 사항 55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56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68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72
 〈별표 4〉 과실상계 등 73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74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5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75

특별약관

I.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① 운전자연령 만20/21/26/30/35/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97
 ②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98
 ③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99

II.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확대

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00
 ② 중증상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102

III.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확대

①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103
 ②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담보 특별약관 104
 ③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105
 ④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07
 ⑤ 적재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08
 ⑥ 차량단독사고 보강 특별약관 110
 ⑦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111
 ⑧ 지진손해 시 렌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12
 ⑨ 지진으로 인한 차량 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13
 ⑩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113

IV.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①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14
 ①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118
 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118

V. 긴급출동서비스

① 프로모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19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23
 ② 프로모카 오토케어서비스 특별약관 123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보험계약 만기까지
고객님이 유의하셔야 할
몇 가지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29
- ③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 129
- ① 타이어 교체 · 펑크 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32
- ② 긴급구난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33
- ③ 긴급견인 서비스 보장확대 추가특별약관 135
- ④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 견인제외형) 135
- ⑤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II 137
- 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41

VI. 보험료납입

-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42
- ②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43
- ③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44
- ④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144

VII. 기타

- 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45
- ②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46
- ③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46
- ④ 주차위반 피건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46
- ⑤ 자기차량손해 도난부담보 특별약관 147
- ⑥ 피건인 고장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47
- ⑦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48
- ⑧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149
- ⑨ 수류양용자동차의 선박운항위험 담보불능에 관한 특별약관 151
- ⑩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51
- ⑪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52
- ⑫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53
- ⑬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155
- ⑭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156
- ⑮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58

VIII. 녹색상품

- ① Ever Green (전자매체 활용 약관 · 증권 발송) 특별약관 160
- ②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161
- ③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62
- ④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64

가입자 유의사항

I. 가입 시 유의사항

1. 가입 전 확인사항
2. 가입 후 확인사항

II. 보험기간 중 유의사항

1. 계약변경
2. 사고발생 시 우선 조치할 사항
3. 보상처리 절차 및 방법

III. 만기 시 유의사항

가입대상	사업용 자동차
------	---------

※ 가입자 유의사항은 프로미카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특별약관 본문내용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보험료 영수증은 받으셨나요?



청약서, 상품설명서 및 보험료영수증을 꼭 받으십시오.
다만,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험료 영수증을 드리지 않습니다.

● 청약서, 상품설명서 기재내용은 확인하셨나요?

다음은 사고 발생 시 보상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입니다.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나이, 가족 여부)
-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대인, 대물사고 등 가입하신 담보내용)
- 분할보험료 납입횟수와 납입기일
-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및 추가 장착한 부속품(선루프 등) 기재 여부

● 꼭! 알아둡시다.

■ 자필서명을 직접 해주세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의 기재내용이 원하시는 보험가입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증권과 약관은 받으셨나요?



보험증권은 약관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보험증권의 기재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증권 발송)특약 가입 시 증권, 약관 등의 계약관련서류는 전자매체(E-mail, 모바일 메시지 등)를 통해 드립니다.

☞ 보험증권을 받지 못하셨나요?

보험가입 후 15일 이상 지나서도 보험증권을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모집인 또는 고객센터(1588-0100)로 연락주시면 바로 재발급하여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분할보험료 납입을 잊지 마세요! P134



보험증권에 기재된 분할보험료 납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분할보험료가 기한 내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이체일에 자동이체계좌의 잔고가 충분하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둡시다.

- 분할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분할보험료 납입 최고문”을 보내드립니다.
- 만일, 분할보험료가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의무보험 제외) P45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기타 철회관련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세요.)

보험기간 중 변경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인 또는 고객상담센터(1588-0100), 고객센터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고객님께 발송되는 각종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교체된 새로운 자동차로 계약 변경을 하셔야 교체된 자동차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연령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최소연령 운전자의 연령이 변경된 경우 운전가능한 연령한정 특약으로 변경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운전가능한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으로 변경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둡시다. P 47

- 위의 변경내용 외에도 다른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변경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변경내용에 따라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부상자 구호

- 사고 발생시 차량 정차후 확인
- 부상상태 확인 후 병원으로 후송 (주위사람의 도움 요청)



2 사고 정황증거 확보

- 사고장소, 차량위치 등 도로에 표시
- 사고의 흔적, 물체를 다각도로 촬영 (카메라 또는 핸드폰 활용)
- 사고 목격자 확보 (연락처/명함을 받아둔다)



3 교통질서 회복

- 부상자 구호, 사고정황증거 확보 등 필요조치 완료 후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변으로 차량이동



4 경찰서 신고

- 사람이 다쳤을 때는 반드시 신고 (차량만 파손되었음이 분명하고,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음)



5 보험회사 통보

- 사고접수센터 : 1588-0100
- 가까운 보상서비스센터



| 통보하실 내용 |

- 보험가입자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의 성명
- 사고일자, 장소, 사고내용 및 손해사항
- 경찰서 신고 여부, 수리공장 또는 입원병원



1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안내

- 사고접수 시 사고상담 및 안내
 - 사고상담 예약시간 지정시 예약 시간에 상담 및 안내
-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필요 시 발급요청

2 보상서비스 전문요원 배당

- 사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보상서비스 전문요원이 안내 드림



3 사고조사

-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확인
- 사고원인, 과실비율 등 조사
- 소액사고의 경우 현장 보험금 지급

4 피해자 및 피해물관리

- 피해자 치료과정 및 피해물 수리과정 확인, 합의금 등 피해액 산정



5 합의절충(소송)

-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고 절충하여 합의 (소송 제기시 처리대행)

6 종결처리

- 보상처리과정 안내
- 할인할증 및 계약변경사항 안내



☞ 꼭! 알아둡시다.

보험가입증명원을 경찰서에서 제출해야 할 경우, DB손해보험에서는 FAX송부 또는 보상서비스 요원의 제출 대행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만기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 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에게 만기사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차 안내	만기일 75일~30일 전	우편발송 또는 LMS(문자)	만기일자
2차 안내	만기일 30일~10일 전	우편발송	만기일자

☞ 꼭! 알아둡시다.

- 보험기간이 2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 · 증권 발송) 특약을 가입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 드립니다.
- (*1) 전자적 방법 : 전자우편,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등

●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가입금액 1억원)	+	대물배상 (가입금액 2천만원)
--------	---	-----------------------	---	---------------------

☞ 꼭! 알아둡시다.

-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지연 등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분	지연 기간별 처분금액		
	10일 미가입	10일 초과 매1일	최고액
대인배상 I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 II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5천원	2천원	30만원

주요내용 요약서

- I.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구성
- II. 보통약관 주요 보장종목
- III.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면책사항

※ 이 장의 안내 내용은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것으로 가입하신 약관의 적용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사업용 자동차

보통약관		특별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배상 I · II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일반사항(권리/의무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자기신체사고 보상확대 • 자기차량손해 보상확대 • 사고처리시 소요 비용 • 친환경 녹색상품 등

● 보통약관 P21 ~ P95

1.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종목
 - 대인배상 I · II :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2. 피보험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종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또는 도난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일반사항 등 권리와 의무 사항
 - 일반사항 :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철회, 의무사항 등
 - 기타사항 :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 승계 등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 : 각 보장종목별 지급기준, 과실상계 등

● 특별약관 P96 ~ P150

1.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가입 가능
 -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으로 보험료 할인 가능한 특별약관
 - 보통약관 보장종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
 - 친환경 녹색상품 등으로 구성

● **대인배상 I · II**

■ **보상받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받는 내용**

- **보험금 항목** ☞ 56p (별표1)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치료관계비 등), 위자료, 휴업손해 등
 - 후유장애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보험금 한도**

구분	보장내용	지급한도
사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후유장애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1급(1억 5천만원) ~ 14급(1천만원)

주) 1급 ~ 14급은 상해/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표 참조

● **대물배상**

■ **보상받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보상받는 내용**

- **보험금 항목** ☞ 67p (별표2)
 -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치세 하락손해

Ⓜ **꼭! 알아둬시다.**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1억원) 및 대물배상(2천만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보험금 한도**

- 1사고당 다음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가입금액
 - 2/3/5/7천만원, 1/2/3/5/10/20억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자기신체사고**

■ **보상받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보상받는 내용**

- **보험금 항목** ☞ 71p (별표3)
 -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
- **보험금 한도**
 - 사망 : 해당 사망 보험가입금액
 - 부상 / 후유장애 : 상해/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가입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보상받는 내용**

- **보험금 항목**
 -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 지급
 -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 보상
- **보험금 한도**
 -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5억) 한도 내 실제 손해액 보상 (과실상계 적용)

Ⓜ **꼭! 알아둬시다.**

'무보험자동차'란 대인배상 II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사고차량 이 밝혀지지 않은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 자기차량손해

■ 보상받는 경우

- 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 차량단독사고보장 특약 가입 시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날아온 물체 등으로 인한 손해

■ 보상받는 내용

□ 보험금 항목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액 한도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단, 최저 ~ 최고 부담금 범위 내 손해액의 20% 부담

📖 꼭! 알아둡시다.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설정된 최저 ~ 최고 부담금 범위 내에서 부담.

구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저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고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 자기부담금 최고한도금액은 50만, 100만, 200만원 중선택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차종 별로 가입 가능한 자기부담금 최저/최고 한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또는 담당지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한하는 특약

| 운전자 연령 |

주민등록증 상 만 연령
기준으로 운전자 연령 제한

| 운전자 범위 |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 범위 제한

● 운전자연령관련 특별약관 🔍 P97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의 연령 제한

- 만 21/26/30/35/43세 이상으로 한정

● 운전자범위관련 특별약관 🔍 P98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의 범위 제한

운전자 특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부모 ④ 부모	
	기명피보험자 1인	○	×	×	×	×	×	×	① 본인
누구나 운전	○	○	○	○	○	○	○	⑤ 자녀/사위, 며느리	
								⑥ 형제자매	
								⑦ 지정1인	

○: 운전 가능
×: 운전 불가

📖 꼭! 알아둡시다.

- 특약 가입 후 운전자능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 | 제외)

| 보통약관 제21조 ~ 제24조

다음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 보통약관 주요 면책사항

| 공통 면책사항 |

-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
- ◎ 전쟁(내란, 폭동, 소요 등)
- ◎ 천재지변(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 단,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의 경우 태풍, 홍수, 해일시 보상
- ◎ 핵연료물질로 인한 사고
- ◎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 연습용으로 사용

주) 대인배상 :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고의 사항만 면책

| 보장종목별 주요 면책사항 |

대인배상 II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물배상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물에 생긴 손해 / 다른사람의 서화, 골동품 등 손해 등
자기신체사고	고의사고를 일으킨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음(다른 피보험자는 지급)
무보험상태	대여사업자동차인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행 중 사고 등
자기차량손해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마약·약물운전 / 흥, 부식 등 자연 소모된 손해 등

📖 **꼭 알아둡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반 관련 사고부담금)

대인/대물배상 보장종목별로 피보험자가 다음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반 :
 - 대인배상 I (지급보험금, 대인배상 II (1억원))
 - 대물배상 의무보험 (지급보험금), 대물배상 의무보험초과금 (5천원)

※ 29p 보통약관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관련 사고부담금)

| 과실상계 |

자동차사고에서 쌍방간에 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 물체 및 침수 |

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 물질을 삼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음

침수 : 흐르거나 고인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금액(보상한도금액)

| 상해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가입금액 등을 정한 등급 ※ 75p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사고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모든 차량소유자에게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 (2천만원) 가입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

| 전부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입액 이상인 경우

| 정부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 정차 및 주차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해지, 해제 |

해지 : 계속적인 계약을 장애에 항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 :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시점으로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 후유장애등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과 보험가입금액 등을 정한 등급 ※ 89p [붙임]

약관 인용 법령 요약

다음은 보통약관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약관 및 법령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

-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제45조 (과로할 때 등의 운전 금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 운전 금지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수사장구호 등 필요조치를 이행해야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자서명법 |

- 제2조 제2호 "전자서명" : 서명자의 확인 및 당해 전자문서의 서명여부를 나타내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 :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제2조 제10호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

| 개인정보보호법 |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함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1. 동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 등(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의방법 등

피보험자등자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본문 내용입니다.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프로모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2편 프로모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4편 일반사항

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 법
항	①, ②, ...	제1항, 제2항, ...
호	1, 2, ...	제1호, 제2호, ...
목	가, 나, ...	가목, 나목, ...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치금급**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모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한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축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²⁾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³⁾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²⁾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한다.

용어풀이

-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장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타입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한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한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소지품'의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18.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차량종류) 구분을 말합니다.

19.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20.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1. **보험계약**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2.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3.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제2조(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정함)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다. 자기자랑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 요율	×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 요율 + 교통법규 위반경력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요율
---------	---	--------	---	-------	---	---------------------------------------	---	------	---	-------------	---	--------

구 분	보상하는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 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상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프로미카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책임 및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대역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비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난자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부실 또는 과오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

- 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정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로로 생긴 손해
-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8호, 제③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비용은 다음의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text{지급 보험금} = \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용어풀이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 II**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에 한정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자동차의 낙하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제7조(피보험자) 제1호**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제1호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자동차 또는 피보험자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비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임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수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보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
- 제1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1호**의 배우자의 부모.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 피보험자라 함은 대여자동차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말함)

-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
 -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비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운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손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용어풀이

(*)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1. 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계약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정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예시) 외장부품의 코팅, 색상 등의 손상에 대한 도색, 판금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제①항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단, 전부도난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타차량’**이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확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망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 '임차인'이 법적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text{지급 보험금} = \text{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text{비용} - \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 요령에서 정한 기준 포함)에 정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단,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된 부분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함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부분품'이란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6호의 가목의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3 '전부손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1)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2)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수리하거나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 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책임이율^{75%}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를 다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경찰·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 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해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75B}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서류 등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경비 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 점검·경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경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32조(가치금급의 지급)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치금급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치금급(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는 가치금급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치금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치금급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치금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치금급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치금급에 더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가 가치금급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치금급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치금급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치금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치금급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치금급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물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할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시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발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²⁾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

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의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2.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함이다.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령,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차량종류,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 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존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①항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 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량종류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①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제1조 제17호)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④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량종류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란 사업용자동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2중·3중 화물자동차 간의 교체
 2. 개인택시·개인소유 1중·2중·3중·4중·경화물자동차 간의 교체
- ⑤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일할계산의 사례

$$\text{가입보험료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 : 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⑤ 간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간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간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⑥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

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 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변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③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①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했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계약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을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자자동차의 양도) 제④항, 제49조(피보험자자동차의 교체) 제④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하거나 돌려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④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③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월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돌려드리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유휴

1.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유휴중지기간(이하 "유휴기간"이라 함)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유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보험회사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유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휴기간의 개시일자와 피보험자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유휴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으며, 유휴기간 중에 피보험자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목록,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영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치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 지급기준에 등장하는 “연령(나이)”는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연령(나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가. 지급액 : 5,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용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산 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p> <p>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p> <p>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p> <p>(**)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p> <p>(***)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분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p> </div>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나) 사업소득자 ^(*)</p> <p>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로 한 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p> <p>산 식</p> <p>(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p> <p>(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p> <p>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p> <p>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이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용어풀이</p> <p>(*)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p> <p>(**)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p> <p>산 식</p> <p>(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p> <p>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통산입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p>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에 한함.</p> <p>용어풀이</p> <p>(*)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p> <p>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p> <p>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p> <p>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p> <p>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이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p> <p>(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p>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p> <p>(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p> <p>(6) 외국인</p> <p>(가) 유직자</p> <p>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p> <p>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p> <p>(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생활비율 : 1/3</p> <p>라. 취업가능월수</p> <p>(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p> <p>(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 <th>취업가능월수</th> </tr> </thead> <tbody>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 <td>36월</td> </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 <td>24월</td> </tr> <tr> <td>76세 이상</td> <td>12월</td> </tr> </tbody> </table> <p>(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p> <p>(4) 취업시기는 19세 로 함.</p> <p>(5) 외국인</p> <p>(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p> <p>(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p>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실 수익액	<p>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p>(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p> <p>(*)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p> </div> <p>마. 호표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산 식</p>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p style="text-align: center;">i=5/12%, n=취업가능월수</p> </div>

나. 부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소속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임원료</p> <p>(가) 임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임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임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p>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p>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구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조건에 따른 항후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항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h>급별</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00</td> <td>6</td> <td>50</td> <td>11</td> <td>20</td> </tr> <tr> <td>2</td> <td>176</td> <td>7</td> <td>40</td> <td>12</td> <td>15</td> </tr> <tr> <td>3</td> <td>152</td> <td>8</td> <td>30</td> <td>13</td> <td>15</td> </tr> <tr> <td>4</td> <td>128</td> <td>9</td> <td>25</td> <td>14</td> <td>15</td> </tr> <tr> <td>5</td> <td>75</td> <td>10</td> <td>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6	50	11	20	2	176	7	40	12	15	3	152	8	30	13	15	4	128	9	25	14	15	5	75	10	20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6	50	11	20																																
2	176	7	40	12	15																																
3	152	8	30	13	15																																
4	128	9	25	14	15																																
5	75	10	20																																		
3. 휴업손해	<p>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p>																																				

항 목	지 급 기 준
3. 휴업손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용어풀이</p> <p>(*)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산 식</p> $1일\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div> <p>나. 휴업일수의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 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함. <p>다. 수입감소액의 산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가사종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용어풀이</p> <p>(*)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p>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휴업손해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인정 대상</p> <p>(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p> <p>(3) 의료법 제4조의 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p> </div> <p>다. 지급기준</p> <p>(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p> <p>(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p> <p>(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상해등급</th> <th>인정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 <td>60일</td> </tr> <tr> <td>3급~4급</td> <td>30일</td> </tr> <tr> <td>5급</td> <td>15일</td> </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배상금	<p>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p> <p>가.입원하는 경우</p> <p>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p> <p>나.통원하는 경우</p> <p>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p>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 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 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p> <p>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 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p>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 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p> </div>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h>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 <td>400</td> <td>14% 이상 20% 미만</td> <td>120</td> </tr> <tr> <td>35% 이상 45% 미만</td> <td>240</td> <td>9% 이상 14% 미만</td> <td>100</td> </tr> <tr> <td>27% 이상 35% 미만</td> <td>200</td> <td>5% 이상 9% 미만</td> <td>80</td> </tr> <tr> <td>20% 이상 27%미만</td> <td>160</td> <td>0초과 5% 미만</td> <td>50</td> </tr> </tbody> </table> <p>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미만	160	0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14% 이상 20% 미만	120																		
35% 이상 45% 미만	240	9% 이상 14% 미만	100																		
27% 이상 35% 미만	200	5% 이상 9% 미만	80																		
20% 이상 27%미만	160	0초과 5% 미만	50																		
2. 상실 수익액	<p>가.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p>																				

항 목	지 급 기 준
2. 상실 수익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산 식</p> <p style="text-align: center;">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p>(가) 산정대상기간</p> <p>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p> <p>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p> <p>(나) 산정방법</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2) 가사종사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3) 무직자(학생포함)</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6) 외국인</p> <p>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p> <p>다. 노동능력상실률</p> <p>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p>라. 노동능력상실기간</p> <p>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p> <p>마. 호프만 계수</p> <p>사망의 경우와 동일</p>

항 목	지 급 기 준
3. 가정 간호비	<p>가. 인정 대상</p> <p>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가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써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p>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부득이하게 새 부분품으로 교환수리 하는 경우 에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가 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으로 교 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나)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²⁾으 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 로 함 (가) 내용연수⁽³⁾가 지난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 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3)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표에서 정하는 내 용연수를 말합니다.</p> </div> <p>(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 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p>
2. 교환가액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 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p>

항 목	지 급 기 준
2. 교환가액	<p>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차료	<p>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 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 로 동급⁽¹⁾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 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²⁾.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 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 모⁽³⁾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 준으로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용어풀이</p> <p>(*)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 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 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 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 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 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p> </div>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⁴⁾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 음) 휴차료 일일표 범위에서 실입차료. 다만, 5톤 이 하 또는 대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 (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 도로 대차 가능</p>

항 목	지 급 기 준
3. 대차료	<p>용어풀이</p> <p>(*)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중”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중을 말합니다.</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p> <p>용어풀이</p> <p>(*)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4. 휴차료	<p>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항 목	지 급 기 준
4. 휴차료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5. 영업손실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p>
7. 견인비용	<p>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p>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급	8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3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4급	7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5급	500만원	1,000만원	1,650만원
6급	4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7급	250만원	500만원	800만원
8급	180만원	360만원	600만원
9급	140만원	280만원	450만원
10급	120만원	240만원	400만원
11급	120만원	200만원	300만원
12급	120만원	180만원	200만원
13급	80만원	130만원	150만원
14급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 목	지 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p> <p>(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p> </div>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p>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p>

항 목	지 급 기 준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p>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p> <p>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가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p>

용어풀이

(*)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함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한하여 감액 적용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구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 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원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급	3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상·과사상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통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염기 분쇄 골절, 경강이뼈(경골) 관절염기 분쇄 골절 또는 경강이뼈 먼쪽 관절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 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3급	1천 2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개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허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경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막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4급	1천만원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차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영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상, 과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5급	900만원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내 골절
		11. 손목 손내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리리(리프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급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기슴증) 또는 기흉(공기 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성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경강이뼈·종아리뼈 분리를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볼통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급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볼통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급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볼통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7급	500만원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성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용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관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축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이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8급	300만원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손 갈비뼈 골절 3. 교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강뼈(홍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축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축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열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평근힘줄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외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0급	200만원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결중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 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 용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p> <p>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p> <p>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항 또는 하항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항 조정 요인과 하항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항 또는 큰 폭의 하항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p> <p>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p> <p>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일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p>
머리	<p>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타박상을 말한다.</p> <p>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항 조정할 수 있다.</p> <p>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p> <p>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영역	내 용	
머리	<p>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 (coma)와 반혼수 (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 (drowsy)은 경도로 본다.</p> <p>사. 타박상, 찢김상처(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p> <p>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p> <p>자.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p>	
흉·복부	<p>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p>	
척추	<p>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p> <p>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중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p> <p>라. 마미중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p>	
팔·다리	공통	<p>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p>
	팔·다리	<p>가.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으로 본다.</p> <p>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p> <p>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p> <p>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p> <p>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p> <p>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p> <p>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p> <p>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p> <p>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p> <p>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 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경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p> <p>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p> <p>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p>

영역	내 용
팔·다리	공통

영역	내 용
팔 · 다리	<p>공통</p> <p>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p>
	<p>팔</p> <p>가. 상부관절손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p>
	<p>다리</p> <p>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근 및 전경골근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 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 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p>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1급	1억 5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 3,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 2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 5백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4급	1억 5백만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쓰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 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일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애 내 용
7급	6천만원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 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강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천 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아합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9급	3천 8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천 7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1급	2천 3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 눈이 모두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넘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 9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근점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3급	1천 500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료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펴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료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麻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보통약관에 보상내용을 확대(추가)하시거나, 제한(축소)하실 때 고객님의 선택가입할 수 있는 특별약관 내용입니다. 특별약관은 '선택가입'한 약관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 I.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 II.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확대
- III.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확대
- IV. 사고처리시 소요되는 비용
- V. 긴급출동서비스
- VI. 보험료납입
- VII. 기타
- VIII. 녹색상품

약관 본문에 등장하는 항목체계의 "표기법"과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

항목체계	표기법	읽는 법
항	①, ②, ...	제1항, 제2항, ...
호	1, 2, ...	제1호, 제2호, ...
목	가, 나, ...	가목, 나목, ...

I.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1.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일정 부분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 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운전자연령만 20/21/26/30/35/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할 자를 만 20/21/26/30/35/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 20/21/26/30/35/43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예외적용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보상함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을 보상함.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용어풀이

(*1) '만 20/21/26/30/35/43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0/21/26/30/35/4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개인택시 및 개인소유인 화물자동차·특수작업용자동차·특정용도자동차·건설기계로서 소유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로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를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예외적용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그 도난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I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을 보상함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을 보상함.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고, 대물배상 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1]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2]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3]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1] 임차인
- [2]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3]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4]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예외적용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 당했을 때, 그 도난 당했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의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 ·II,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을 보상함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을 보상함.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등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고, 대물배상 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4.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은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①'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 I**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 II**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운전자 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II.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치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 II**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다만, 보통약관 **제7조 제1호**의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실제손해액} + \text{비용} - \text{공제액}$$

- 실제손해액은 '**별표 1-5)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
- 위 '공제(扣除)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 자동차보험(공제 계약 포함) **대인배상 I** (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 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위 '①'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②'의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7. 보험금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중증상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이면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사고, 이하 같음)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등급 3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비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따름)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상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의 피보험자^(*)
- 2) 위 '1)'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위 '1)'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자
- 4) 위 '1)'부터 '3)'까지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의 피보험자'란 대여자동차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Ⅲ.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자기차량손해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통약관에서 보장되는 내용 이외에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차량 신차가액 보상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가 신차^(*)인 대여사업용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 '신차'란 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차량을 말합니다.
- (**) '대여사업용자동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보아 다음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과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

보험금 종류	예외적용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보험금 종류	예외적용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지급(단, 차량가액 초과 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② 위 '①'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등록 당시의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구입당시 차량가액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신차가액의 변경

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은 교체된 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변경합니다. 다만, 교체된 차량이 신차가 아닌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교체하는 시점부터 없어집니다.

② 회사는 위 '①'의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②'의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가 **대여사업용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때,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①'의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 이 특별약관은 **임시교통비 담보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가 **대여사업용자동차**(*)로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1] 렌트비용담보

2. 렌트비용의 보상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함)을 다음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에 **렌트비용인정기준액**을 공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㉞ 수리 가능 시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필요한 기간과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음)
㉟ 수리 불가능 시	10일
㉡ 도난 시	경찰관서에서 신고한 날부터 30일 한도(단,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을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만으로 함)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구분	인정기준액
㉓ 렌트를 하는 경우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안에서 실제로 든 비용(단, 회사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제공했을 때 대여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30%에 상응하는 금액(단, 1일 지급한도는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한정함)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차량 종류	소형 (1,600cc이하)	중형 (1,600cc초과 2,000cc이하)	대형 (2,000cc초과 2,800cc이하)	대형 (2,800cc초과)	다인승 및 승합
1일 렌트비용 한도금액	76,000원	112,000원	216,000원	349,000원	137,000원

[2] 렌터카 손해담보

3. 렌터카 손해의 보상

- 회사는 위 '2.'에 따라 렌트를 한 때에 한정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함)를 피보험자가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정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 '①'의 렌터카의 사고는 '2.의 1)'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마지막 날의 24시를 한도로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다만,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 중 렌터카의 차량손해는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 회사가 보상할 '①'부터 "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피보험자
[1] 렌트비용담보	기명피보험자
[2] 렌터카 손해담보	보통약관 제7조/13조/18조/22조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3조(이상 "피보험자")에서 규정하는 자

5.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 ① 고장수리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정비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터카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 적용 시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그 렌터카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정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보상할 위 '①'의 손해에 대하여 렌터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그 렌터카의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 '피보험자동차의 정비기간'이란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 '2.'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 이외의 정비기간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 '렌터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영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렌터카의 임차인
- 렌터카의 임차인의 배우자
- 렌터카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② 기명피보험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의 대가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자(정식 직원, 계약직, 임시고용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렌터카 차량손해 보상한도

- ① 회사가 렌터카 차량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렌터카 차량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터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터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6. 보험계약의 종류

이 추가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③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렌트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④ 적재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정담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이하 같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단, 도난에 의한 손해는 제외)로서, 보험가액의 20% 이상이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하며 손해액 산정 시 이 특약에서 담보하는 적재물 손해액 제외)가 발생한 경우 적용됩니다.
- ② 위 ①의 경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에 적재된 물건(이하 "**적재물**"⁽²⁾이라 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다음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적재물가액

(이하 "적재물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위 ①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위 ①, ②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사고당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 '**주차 또는 정차 중**'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차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정차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 '**적재물**'이란 피보험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실려서 운송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물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의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및 연료
- ② 통화, 유가증권, 인지, 예금증서,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③ 귀금속, 서화, 골동품, 미술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④ 원고, 교본, 설계서, 도안, 중서, 장부,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 ⑤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 및 식물. 다만, 판매용으로 가공된 농축수산물(2)은 제외합니다.
- ⑥ 의치, 의족,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신체보조장구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적재물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동차에 적재물을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3. 적재물의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4. 적재물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곰팡이, 변질, 변색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및 쥐나 벌레 등으로 인한 손해

5.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때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적재물에 대한 회사의 권리

- ① 회사가 적재물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을 때에는 적재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적재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적재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경우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적재물가액의 100% 미만인 해당 때에는 보험금의 적재물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7. 현물보상

회사는 적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을 주는 것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 (*)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 **‘물체’**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타차량’은 물체로 보

지 않습니다.

- (*)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3)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지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 **‘지진’**이란 기상청의 국가기상종합정보의 지진·화산 발표경보상의 자연지진을 말하며, 지진규모는 국제기준(지구규모 : Richter scale) 4.0 이상을 적용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① 지진손해 시 렌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대여사업용자동차^(*) 차종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렌트비용의 보상

-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드는 통상의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함)을 다음 '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사고마다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에 렌트비용 인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렌트비용 인정기간

구분	인정기간
㉔ 수리 가능 시	30일을 한도로 실제 수리에 걸리는 기간(단,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필요한 기간과 부당한 수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않음)
㉔ 수리 불가능 시	10일

2)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구분	인정기준액
㉔ 렌트를 하는 경우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안에서 실제로 든 비용(단, 회사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제공했을 때 대여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함)
㉔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30%에 상응하는 금액(단, 1일 지급한도는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로 한정함)

〈별표〉 1일당 차량종류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차량 종류	소형 (1,600cc이하)	중형 (1,600cc초과 2,000cc이하)	대형 (2,000cc초과 2,800cc이하)	대형 (2,800cc초과)	다인승 및 승합
1일 렌트비용 한도금액	76,000원	112,000원	216,000원	349,000원	137,000원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⑥-② 지진으로 인한 차량 전손 시 취득세비용 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대여사업용자동차^(*) 차종의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대여사업용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 외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제24조 '전부손해' 규정을 따름)일 때,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가액 초과수리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의 차량전손 시 취득세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 손해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한도에서 실제로 소요된 자동차 취득세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지진손해 보상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⑦ 전기자동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비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의 전기자동차^(*)(대여자동차⁽²⁾, 택시, 승합(버스), 화물, 장의차)인 경우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2) 이 특별약관에서 '대여자동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한 자로부터 빌린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장 특별약관을 포함)에서 규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 배터리를 파손되어 수리 또는 부분교체를 통한 활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구동 배터리**^(*) 전부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② 회사는 위 '㉠'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그 교체된 배터리의 잔존물 및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구동 배터리'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 배터리 제외)

3. 대위

회사는 보통약관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 사고로 인한 잔존물 취득 시 구동 배터리는 취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IV.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비용 이외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 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보장확대형)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내용	지급기준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1) 사망 형사 합의금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2,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3,000 만원 한도
2) 상해 형사 합의금	다음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단, 한 사고가 다음 ㉡와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이 특별약관의 <별표>에 해당하는 사고 ㉢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상해 1~3급 : 1,000만 원 한도	상해 1~3급 : 3,000만 원 한도	상해 1~3급 : 3,000만 원 한도 상해 4~7급 : 500만원 한도 상해 8~14급 : 100만원 한도
3) 변호사 선임 비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실제 든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 ㉢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해 공판정자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3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500만원 한도

구분	보상내용	지급기준		
		기본형	고급형	최고급형
4) 벌금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2,000만원 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지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000만원 한도)		

-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②의 1), 2), 3), 4)’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 만을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상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의 1) 또는 2)’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⑦ 위 ‘⑥’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2.의 ②, 2)’ 관련사고

- ◇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화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건널목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6)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4호) 또는 음주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9호)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7)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9)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3호) 영향에 따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보통약관 제1조 제15호)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대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할의금, 상해형사할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① 벌금제의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4'**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1-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의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V. 긴급출동서비스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차량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SOS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1) 긴급견인	㉓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㉔ 위 '㉓'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2) 비상급유	㉕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㉖ 위 '㉕'의 비상급유 시 3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㉗ 위 '㉕' 또는 '㉖'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3) 배터리 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	1일 사용제한 없음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3) 배터리 충전	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4) 타이어 교체	㉞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㉟ 위 '㉞'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타이어 펑크 수리	㉞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㉟ 위 '㉞'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4)'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㉟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6) 잠금장치 해제	㉞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6) 잠금장치 해제	㉟ 위 '㉞'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7) 브레이크/파워오일 보충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충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휴즈교환	휴즈 합선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부동액 보충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긴급구난	㉞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㉟ 위 '㉞'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10) 긴급구난	<p>다.</p> <p> 용어풀이</p> <p>(*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p> <p>(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p> <p>(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p> <p>(4) 2,500cc 이상의 "국산 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난한 경우</p>	1일 사용제한 없음

- ② 위 '①'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①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지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프리미엄 SOS서비스 특별약관 '2.의 ①, 6)'의 잠금장치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프리미엄 오토케어서비스 특별약관

1. 회사의 서비스책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SOS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1) 긴급견인	<p>㉗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60km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p> <p>㉘ 위 '㉗'의 긴급견인 시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2) 비상급유	<p>㉗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p> <p>㉘ 위 '㉗'의 비상급유 시 3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p>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2) 비상급유	<p>는 제공되는 연료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p> <p>㉓ 위 '㉒' 또는 ㉑'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위 '1)'에 따른 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p>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3) 배터리 충전	<p>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1일 사용제한 없음
4) 타이어 교체	<p>㉒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p> <p>㉑ 위 '㉒'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5) 타이어 펑크 수리	<p>㉒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㉑ 위 '㉒'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4)'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p> <p>ㄱ)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p>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5) 타이어 펑크 수리	<p>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p> <p>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p> <p>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p> <p>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p> <p>㉑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p>	1일 사용제한 없음
6) 잠금장치 해제	<p>㉒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p> <p>㉑ 위 '㉒'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7) 브레이크/파워오일 보충	<p>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충해 드립니다.</p> <p>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8) 휴즈교환	<p>휴즈 합선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p> <p>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9) 부동액 보충	<p>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액을 보충하여 드립니다.</p> <p>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p>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9) 부동액 보충	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10) 긴급구난	<p>㉗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p> <p>㉘ 위 '㉗'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용어풀이</p> <p>(*)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p> <p>(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p> <p>(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p> <p>(4) 2,500cc 이상의 "국산 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난한 경우</p> </div>	

② Auto Care 서비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차량점검	<p>㉗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별표>에 기재된 25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p> <p>㉘ 위 '㉗'의 점검 시, 자동차 고장진단용 스캐너 장비를 사용하여 차량의 각종 센서류의 이상 유무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단, 외산차 및 차</p>	보험기간 중 1회만 가능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차량점검	동차제조사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 불가능한 차량종류는 제외)	보험기간 중 1회만 가능
2) 차량 실내 살균/탈취	피보험자가 회사가 지정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실내 살균, 탈취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리차량 운반	<p>㉗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그 작업시간이 1시간이상 걸릴 때에만 수리 후 피보험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피보험자동차를 운반해 드립니다.</p> <p>㉘ 위 '㉗'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라이닝, 타이어, 워셔액, 부동액, 각종 오일 등과 같은 단순소모품만의 교체 또는 보충은 수리로 보지 않으며,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km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p>	횟수제한 없음
4) 차량등록 대행 예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신규, 이전,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등록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5) 차량검사 대행 예약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검사대행을 전문업체에 예약하여 드립니다.	

③ 위 '㉘'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㉘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㉘'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위 '2.의 ①'의 SOS서비스를 6회(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받았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2.의 ①'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①' 또는 '2.의 ②'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약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차량점검서비스 항목

점검 항목	세부 점검 항목
전기/전자 콘트롤류	스타트 모터, 배터리, 헤드램프(안개등), 실내등, 브레이크등, 컴비네이션 스위치, 알터네이터
오일 및 냉각수 점검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냉각수), 라지메이터 호스, 워셔액
벨트류	팬벨트(에어컨벨트 포함)
구동계통	오토미션오일(자동변속기) 또는 클러치 및 클러치실린더(수동변속기)
조향 및 현가 계통	파워스티어링(전동 및 유압식), 타이어 공기압(에비타이어 포함), 타이어 편마모
제동(브레이크) 계통	브레이크 패드, 주차 브레이크
실내장치류	에어컨(에어컨필터 포함), 히터, 경음기
바디 및 외장	와이퍼블레이드, 사이드 미러 작동
각종 센서류	자동차 고장진단용 스캐너 점검 (단, 외산차 및 자동차제조사외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인해 제공불가능한 차량종류의 경우 제외)

2-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프로미카 오토케어서비스 특별약관 '2.의 ①, 6'**의 잠금장치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래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법정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 적재정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단, 적재정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위험물**^(*) 적재 자동차는 제외)
- 3) 구조변경 또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특수작업용 자동차 및 특정용도 자동차 및 캠핑카



용어풀이

(*) '위험물'이란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방사선 물질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2. SOS서비스 (중형 화물 · 승합)의 제공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SOS서비스(중형 화물 · 승합)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② SOS서비스(중형 화물 · 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비상급유	㉮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5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차 부담)
	㉯ 위 '㉮'의 비상급유 시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위 '㉮' 또는 '㉯'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2) 배터리 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 제한 없음
3) 잠금장치 해제	㉓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㉔ 위 '㉓'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4) 긴급견인	㉓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총 3회를 한도로 제공합니다. ㉔ 위 '㉓'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3회 사용 이후 긴급견인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그 견인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㉕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㉖ 피보험자동차가 적재정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인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에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트레일러는 긴급견인서비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4) 긴급견인	를 제공하지 않으며 트레일러 분리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㉗ 피보험자동차가 적재정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인 경우로 전용도로 등 위험지역에서 피보험자동차의 1축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타이어를 수리한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 제공 가능) ㉘ 피보험자동차가 적재정량 8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인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에 적재물이 있는 경우,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적재물을 하차한 경우에는 긴급견인서비스 제공 가능)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회사는 위 '2.'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어 견인, 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 견인, 구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㉔'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

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
 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① 타이어 교체 · 펑크 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적재정량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서 구조변경 또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미
 카 SOS서비스 특별약관'의 가입이 제한되는 차량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기타 회사가 인정한 차량이란 특수작업용 자동차 또는 특정용
 도 자동차로서 크기·중량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인정하는 차
 량을 말합니다.

2. SOS 서비스의 제공

① SOS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타이어 교체	㉗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㉘ 위 ㉗의 타이어 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2) 타이어 펑크수리	㉗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㉘ 위 ㉗의 타이어 펑크 수리 시 다음	1일 사용제한 없음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2) 타이어 펑크수리	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의 2. SOS서비스의 제공의 ㉘의 4)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㉙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㉚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㉛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㉜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㉝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㉞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③ 위 '㉞'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의 2. SOS서비스의 제공의 ㉘의 4) 긴급견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을 따릅니다.

③-② 긴급구난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 · 승합)을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SOS 서비스의 제공

① SOS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긴급구난	㉗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1일 사용제한 없음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사용 횟수
1) 긴급구난	<p>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p> <p>④ 위 '㉗'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용어풀이</p> <p>(*)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출동한 차량 외 포크레인, 트랙터, 오프로드 전용차량 등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차량의 전복, 견도, 파손예방 등을 위해 스파이더바, 슬링바, 하체작업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1일 사용제한 없음

③ 위 '㉑'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승합)의 2. SOS서비스의 제공'의 ㉒(4) 긴급견인'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중형 화물·승합)을 따릅니다.

③-③ 긴급견인 서비스 보장확대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승합)'(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의 '1.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이면서 별도로 회사가 인정한 차량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SOS 서비스의 제공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승합)'의 '2. SOS서비스 (중형 화물·승합)의 제공'의 '4) 긴급견인'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로 특별약관의 긴급견인 제공한도(보험기간 중 총 3회)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제공한도를 보험기간 중 총 3회(1일 1회만 제공) 확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중형 화물·승합)을 따릅니다.

④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중형 화물·승합 견인제외형)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아래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정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단, 적재정량 5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위험물^(*) 적재 자동차는 제외)
- 구조변경 또는 크기 등으로 인하여 '프로미카 SOS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특수작업용 자동차 및 특정용도 자동차 및 캠핑카

용어풀이

(*) '위험물'이란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방사선 물질 등의 물질을 말합니다.

2. SOS서비스 (중형 화물·승합)의 제공

-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1) 비상급유	㉗ 피보험자동차가 연료를 완전히 소진하여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5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하여 드립니다. ㉘ 위 '㉗'의 비상급유 시 5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2회 사용 이후 비상급유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시에는 제공되는 연료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㉙ 위 '㉗' 또는 '㉘' 에도 불구하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2) 배터리 충전	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배터리 교환 시는 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3) 잠금장치 해제	㉚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보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㉛ 위 '㉚'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중형 화물·

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섬(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회사는 위 '2.'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어 견인, 구난 등이 필요한 경우 견인, 구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6회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㉚'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㉓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 II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자사102}의 차량 이면서 **전기자동차**¹⁾인 법정승차 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4톤 이하 화물자동차, 법정승차 정원 16인 이하 대여자동차, 택시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되는 서비스(이하 "SOS 서비스"라 함)를 제공합니다.



용어풀이

- (*)1)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대량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프로미카 보험저식

- 102) **「회사가 인정하는 자동차제조사」**란 SOS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가능한 자동차제조를 말합니다.
(대상 자동차제조사: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

2. SOS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SOS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1) 긴급견인	<p>㉓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 구동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자력으로 운행할 수 없어 수리 또는 충전을 위해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한도로 가까운 정비공장 또는 가까운 전기자동차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용어풀이</p> <p>(*) '구동 배터리'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시동)배터리 제외)</p> </div> <p>㉔ 보조(시동)배터리의 방전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조(시동)배터리 교환 시는 보조(시동)배터리 실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p> <p>㉕ 위 '㉓'의 긴급견인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 및 전기자동차 충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2) 구동 배터리 충전	<p>㉓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 보험기간 중 총 2회, 1회당 15kw를 한도로 구동 배터리 충전하여 드립니다.</p> <p>㉔ 위 '㉓'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출동 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p>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2) 구동 배터리 충전	<p>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드립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견인거리 한도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p>	1일 1회만 제공 (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
3) 타이어 교체	<p>㉓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장 난 타이어를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Wheel)을 개조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닌 경우에만 교체서비스가 가능합니다.</p> <p>㉔ 위 '㉓'의 타이어교체 시 차량의 적재물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1일 사용제한 없음
4) 타이어펑크 수리	<p>㉓ 지면에 닿은 타이어드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p> <p>㉔ 위 '㉓'의 타이어펑크 수리 시 다음과 같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1)' 또는 '3)'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p> <p>ㄱ) 아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p> <p>ㄴ) 런플랫(Run-flat)형, 튜브형 타이어 등과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p> <p>ㄷ)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p> <p>ㄹ) 그 밖의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p> <p>㉕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p>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5) 잠금장치 해제	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는 등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㉕ 위 '㉔'의 잠금장치 해제 시 특수 잠금장치 (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 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출동차량이 현장에서 잠금장치해제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일 사용제한 없음
6) 브레이크 오일 보충	브레이크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일 부족분(최대 1리터 한도)을 보충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긴급구난	㉔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출동한 자동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에만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합니다. ㉕ 위 '㉔'의 긴급구난 시 차량의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힘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용어풀이</p> <p>(*1)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5t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걸 </div>		

서비스 종류	보상내용	1일 한도
7) 긴급구난	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4) 2,500cc이상의 "국산 차량 및 외제차량"을 구난한 경우	1일 사용제한 없음

- ② 위 '㉔'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긴급출동하였으나 현장 조치만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운행하기 어려워 긴급견인을 할 경우에는 위 '㉔의 1)'과 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㉔'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해당 SOS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요청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SOS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견인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 2) 섬(제도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섬 제외) 또는 산간 지역
 - 3)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② 회사는 SOS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특약의 자동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SOS 서비스를 6회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끝납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2.의 ㉔'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드립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①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전자자동차 SOS서비스 특별약관 II '2.의 ①, 5)'의 잠금장치 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VI. 보험료 납입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의 납입 방법과 결제수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1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 ② 위 '㉠'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 ㉡'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받을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위 '3.의 ㉡'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해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만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한 날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보통약관 제1조 제2호)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① 위 '3.의 ㉡'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위 '㉠'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받은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적용됩니다.(단, 자동이체는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계좌만 해당함)

2. 보험료 자동납입

-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에 따라 자동이체로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1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 ③ 위 '㉡'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 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경우,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이체될 수 없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체일에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다만, 11회 분할납입의 11회 분할보험료를 약정이체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1개월만을 납입유예기간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회사가 초회보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받지 못한 경우,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⑤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 시 가산기간

납입방법		미납입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비연속 2회납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 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③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를 보험료를 받은 때로 봅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의 사고카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④ 보험료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가입하는 보험계약 건수가 월평균 25건 이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분할보험료를 포함)와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정산되지 않았을 때는 정산기일의 도래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Ⅶ. 기타

※ 이 특약들을 가입함으로써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양도된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고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물배상 의무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 3)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에 따른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경우,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 위 또는 연령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위 '①'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 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① 회사는 위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①'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③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함)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함)
- 1) 캐터필러(커팅엣지, 엔드비트를 포함), 배토판 버킷(딤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 중 인제나 땅에 닿는 부분
- 2) 드로프햄어, 디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제크,리더 등)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품

④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함)을 견인개시할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합니다.

-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 '견인개시할 때'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 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견인차량의 잠금장치 해제작업으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⑤ 자기차량손해 도난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견인 고장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견인 고장차량(단,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견인되는 차량은 제외함)을 견인 개시할 때^(*)부터 통상의 견인작업의 과정을 거쳐 차주가 요구하는 목적지 또는 정비작업을 위한 수리처에 인도할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회사가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용어풀이

(*1) '견인개시한 때'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 연결장치로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및 제③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견인차량의 잠금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 3)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견인 되는 차량의 견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 ① 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상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이하 같음)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지정대리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의 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은 1명이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 1)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3)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 4)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④ 동일 순위의 자들의 전원 합의가 없으면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계약자는 위 '2.의 ①'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 등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1)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3)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5)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의 ③'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6) 그 밖에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② 위 '①'에 따라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죽거나 위 '3.'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단, 지정대리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화물자동차 또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이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영상기록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가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부터 과거 3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4.'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 2)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해 '2.'에서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고지하는 경우

용어풀이

(*)1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영상기록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제조사,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등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사항
- 2) 피보험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사진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등은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항상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 정보를 요청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2.'와 위 '①'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 ① 이 특별약관 체결 후 위 '1.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영상기록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

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⑨ 수륙양용자동차의 선박운항위험 담보불능에 관한 특별약관

1. 자동적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수륙양용자동차^{(*)1}인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자동차보험의 담보불능 위험

자동차보험은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등에 한하여 그 운행 중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수륙양용자동차의 선박운항^{(*)2} 중 위험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수륙양용자동차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육상을 주행하기 위한 차 바퀴와 수상 및 수중을 운항하기 위한 구조(프로펠러 또는 물갈퀴판 등 추진을 위한 장비)를 겸비한 자동차

- (*)2 이 특별약관에서 선박운항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육상이 아닌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의 수상 및 수중에서 운항하는 경우
 - ② 수상 및 수중 운항을 위해 진입하거나 육상으로 진출하는 순간으로서 차체의 일부가 물에 닿아 있는 경우(단, 타이어만 물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
 - ③ 기타 상기의 통상의 자동차운행이 아닌 선박운항으로 확인되는 경우

⑩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 대물배상의 적용대체 등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을 준용합니다.

3. 가입금액의 선택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2. 보상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 침수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Door)나 선루프(Sun roof)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차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 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용어해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근인공제회법」, 「한국고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②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① 용어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증명서류의 제출

-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전용보험료로의 전환

-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4. 전환취소

-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⑬ 차선이탈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로서 개인소유 경·중·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용어풀이

(*) 「차선이탈 경고장치」란 피보험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행하는 차로를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말하며, 피보험자동차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차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차선유지지원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경고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등은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 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선이탈경고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보행자+후면추돌)와 AEB(CCR) : Autonomous Emergency Braking(후면추돌))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함)가 요구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① 보험계약자 등은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며,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경고효과를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경고 등, 신호음, 진동의 크기나 주기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위 '①'의 사항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 ①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방충돌 경고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 경고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 ① 위 '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①'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Ⅲ 전방충돌 경고장치에 관한 특별약관

※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시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로서 개인소유 경·중·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전방충돌 경고장치'란 전방 주행중인 차량과 피보험차량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 : Forward Collision Warning)를 말하며, 전방의 보행자 또는 물체를 인식하여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작동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PED+CCR)) :

15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실제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²⁾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한 경우로서, **외장부품**⁽³⁾을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

용어풀이

- (*)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부품 공시가격**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외장부품**이라 함은 자동차의 외관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범퍼, 보닛(후드), 펜더, 트렁크리드, 도어 및 백도어를 의미합니다.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OEM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및 「자기차량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경미한 손상**⁽¹⁾에 해당하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경우
2. 자동차에 이미 장착되어 있던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²⁾이 파손되어 교환수리하는 경우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OEM부품 또는 품질인증부품 이외의 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중고부품, 재생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상책임(대물배상)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또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보통약관 「대물배상」인 경우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인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환입)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적용 제외)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OEM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이 OEM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 제3조(OEM부품 사용에 대한 특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따른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IX. 녹색상품

※ 이 특약을 가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① Ever Green(전자매체 활용 약관 · 증권 발송) 특별약관

※ 이 특약은 중이를 절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 (“1)를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 (*) ‘**보험계약자**’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 서류를 말합니다.
- (*)2)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자는 다음 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 방법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전자우편
 - (2) 모바일 메시지 등의 메시지 서비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선택한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1) 전자우편 : 보험계약자료를 받을 전자우편의 수령처(이메일주소) 정보
 - 2) 모바일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 핸드폰 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
- ② 위 ‘①의 1), 2)’에서 알려진 정보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위 ‘①’ 또는 ‘②’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 발급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알려진 정보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①’에 따라 발급한 보험계약자료를 발급한 날부터 1개월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해당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을 통해 다시 발급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 이유로 보험계약자료를 다시 발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자료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료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정담보 특별약관**, 이하 동일)에 가입하거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 ① 회사는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친환경부품**^(*)수리를 한 경우에는 **새 부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 ‘**친환경부품수리**’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1) **중고부품** :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드, 본넷드,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패널,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가능), 전 · 후방 센서
 -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 (**) ‘**새 부품가격**’이란 AOS(Arecom On-line System) 内 등록된 부품의 가격을 말합니다.
- *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사고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사고 : 기명피보험자
- 2) **대물배상** 사고 :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8조/14조/19조/23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 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품가격과의 차액
-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품가격과의 차액
- 4)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급기 일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새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친환경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포함)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㉞ **대물배상**상에서 해당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중고시세
 - ㉟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보험가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5. 보험금의 반환

- ① **보통약관 제4조/7조/22조**(이상 “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 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상** 또는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금 전액을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친환경부품수리를 했지만 친환경부품의 결함 등으로 이미 사용한 친환경부품을 새 부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③ 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화물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자동 적용됩니다.

용어풀이

- (*) **‘전기자동차’**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로서「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제4호 태양광자동차 및 제2조 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제외)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Family통합보장특별약관 및 자동차상해특별약관을 포함)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하여, 피보험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²⁾, 이로 인한 감전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³⁾를 입은 때의 손해를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Family통합보장특별약관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란 해당 전기자동차의 정격의 휴대용 충전기(또는 가정용 충전기기 및 장치), 거주지 혹은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말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이란 피보험자동차의 충전을 위하여 충전설비를 조작한 시점부터 충전 완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전설비의 접촉 여부는 무관합니다.
- (3) **‘치료를 요하는 상해’**란 감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상 및 신체조직의 괴사, 심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 등의 상해로서, 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의학적 조건이 있는 경우 만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이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대위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①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²⁾(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함)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1·2·3중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 'UBI'란 Usage Based Insurance의 줄임말로 '운전자 운전 습관 기반의 보험'을 뜻합니다.
- (2)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란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 중 하나로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특별약관의 무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위 '①'의 운행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운행기록장치가 아닌 경우
- ③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제휴사업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특별약관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이하 '점수'라 함)를 확인하여 점수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회사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이내에 2,000km 이상 주행하여 산출된 점수에 한정하며,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할인 제외)



용어풀이

- (*) '안전운전점수'란 운행기록장치에 집적된 운행정보로 회사가 제휴한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안전운전점수를 말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①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안전운전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기록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약관의 가입이 승인되지 않거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무효

- ①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산출된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해당 안전운전점수를 바탕으로 한 보험료 할인금액을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이익제공 행위 금지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 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 **사교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DB손해보험)**
- 전 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bins.com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신고센터」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 전화번호**
- 고객센터 : 1588-0100
- 계약체결 지점 : 증권에 기재된 연락처 참조
- **관련 기관** :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니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시간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http://www.nice.co.kr/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인터넷 http://www.kisamc.com/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인터넷 http://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인터넷 http://www.koreacb.com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 담당자	(02) 3011-49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대한손해보험협회 담당자	(02) 3702-85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 코리아리빌딩)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파본이나 잘못된 약관은 교환하여 드립니다. 강원일보 T. 02-733-7228 / DB손해보험 T. 02-3011-3331

함께, 약속한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은 소망입니다.

안전을 위한 다짐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내일이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DB손해보험은 언제나 그 곁에서
함께, 약속합니다.

함께, 약속

